

「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2. 18(목) 평창군수(안전건설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4. 14(목)
- 상정일자 : 2016. 04. 27(수) 제21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안전건설과장 장근용)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본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및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군수는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중 “제1항”을 “군수는 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”를 “관계전문가의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